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학 교육지원 대상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 등〉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66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대학 교육지원 대상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	2
2. 취업지원을 받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이 불성실 근무 시 취업지원 제한	7
※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제출자 : 박대출의원 등 11인
2. 제출일 : 2025. 6. 25.
3. 회부일 : 2025.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위 내용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등).

Ⅲ. 검토의견

1. 대학 교육지원 대상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

□ 개정안은 대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대상을 현행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u>장기복무</u>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지원) ① ----- <u>중·</u> <u>장기복무</u>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u>장기복무</u> 제대군인 또는 <u>그 자녀</u> 가 다른	③ ----- ----- ----- <u>중· 장기복</u> <u>무</u> ----- <u>장기복무 제</u>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대군인의 자녀----- ----- ----- ----- -----.
---	---

- 현행법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고, 일정 생활 수준 이하(소득 인정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금액 대비 125% 이하¹⁾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고교취학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²⁾

1) 소득인정액(2025년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상한	2,990,016	4,915,823	6,281,691	7,622,216	8,885,240	10,081,006	11,235,535

-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

□ 개정안은 현재 교육지원의 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로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평균 28세에 전역)의 학력 향상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중대장이나 중대행정관을 마친 중간간부로 장기복무를 희망하지만 군의 구조상 다수가 강제로 전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역 당시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며 기업체의

원을 실시하지 않는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한 경우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입학금 및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입학금과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신규채용 제한연령도 초과(20대 후반 ~ 30대 초반)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국토방위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가입을 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미취업률은 2025년 3월 기준 36.3%로, 국가 차원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3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연평균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7,508	9,170	7,639	9,481	10,388
장기복무 전역자	15,962	5,321	4,640	5,420	5,902
중기복무 전역자	11,546	3,849	2,999	4,061	4,486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도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 중기복무 제대군인 미취업률 >

(단위 : 명 / 2025.3.31. 기준)

전체 중·장기복무 회원 등록자	전체 중기복무 회원 등록자(A)	중기복무 등록자 중 미취업자(B)	중기복무 등록자 미취업률(B/A)
123,511	40,828	14,802	36.3

자료: 국가보훈부

- 전체 중기복무 제대군인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는 전체의 23.0%로, 개정안과 같이 지원대상이 중기복무 제대군인 까지 확대되는 경우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0~2024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별 학력사항 >

(단위 : 명)

구 분		전역자 계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
장기복무 전역자	인 원	23,607	5,421	18,186
	비 율	100.0%	23.0%	77.0%
중기복무 전역자	인 원	14,271	3,284	10,987
	비 율	100.0%	23.0%	77.0%
계	인 원	37,878	8,705	29,327
	비 율	100.0	23.0%	77.0%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 및 사회복지 준비를 위하여 필수적인 교육기회가 확대될 수 있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비하여 다소 소외되었던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책임이 강화된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음.

□ 국가보훈부도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역량향상 기회를 부여하여 원활한 사회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2. 취업지원을 받은 장기복무 세대군인(자녀)이 불성실 근무 시 취업지원 제한

□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³⁾가 규정하고 있는 취업지원 제한 조항 준용이 누락되어
있는 법 체계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안 제14조제2항),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14조는 취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을 취업
지원 대상자를, 제2항은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 등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업지원에 관한 조항⁴⁾을 폭넓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취업지원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
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34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不正行爲)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제34조(보훈특별고용)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제36조(차별대우 금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의 취업지원 제한 조항은 준용하고 있지 않음.⁵⁾

- 현재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에게 3회까지 취업 지원을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4조(취업지원 등) ① (생략)	제14조(취업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u>경력기간</u> 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② ----- ----- ----- ----- ----- ----- ----- <u>취업지원 제한, 경력기</u> <u>간</u> ----- -----

5)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업지원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준용조항을 두고 있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략)

제19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

-----제34조의2, 제35
조의2-----.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교육지원) ① -----중·
장기복무-----

-----.

② (현행과 같음)

③ -----

-----중·장기복
무-----장기복무 제
대군인의 자녀-----

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
--------------	-----------------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1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입학금·수업료) 연혁

- **1982. 3. 1. ~** : 생계곤란 장기복무(20년) 전역하사관* 자녀 중 고교 교육지원
* 근거 :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810404 일부개정·시행) 부칙에 의해 '82.3.1.부터 시행
- **1985. 1. 1. ~** : 지원법률명 변경(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1997. 7.14. ~** : 지원법률명 일부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1998. 7. 1. ~** : 지원법률 제정(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20년 이상 제대군인 본인 대학교육 지원 시작**
* 20년 이상 전역 하사관 자녀 ⇨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하사관준사관장교) 본인 및 자녀
** 전역 3년 이내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대학지원(입학금·수업료 본인부담금 50/100 보조), 자녀 고교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일정 소득 이하 가구)
- **2006. 5. 1.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로 지원 확대**
*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